

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 1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가. 미사지구에 사회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규제 선정 과제를 정비하여 현행화 하며,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내용 전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미사지구 내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
- 나. 신설된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(안 제2조)
- 다.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(안 제5조)
- 라.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 신설(안 제6조)
- 마. 보조금관리 근거를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로 개정(안 제7조)
- 바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참조)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5년 7월 20일 ~ 8월 3일(15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부서협의 기간 : 2015년 7월 20일 ~ 8월 3일(15일간)
- 나. 협의내용 : 의견 없음(성별영향평가, 규제관련)

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보훈지원팀

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남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,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지) 하남시 사회복지관(이하 “사회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사회복지관의 사업)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가족복지사업 : 가족관계 증진, 가족기능 보완, 가정문제의 해결 및 치료,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
2. 지역사회보호사업 : 급식서비스, 경제·일상생활 지원, 정서서비스,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
3. 지역사회조직사업 : 주민조직화 및 교육, 복지네트 구축, 주민복지 증진,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·조직 사업 등
4. 교육·문화사업 : 아동·청소년 평생교육, 성인기능교실, 어르신 여가문화, 문화복지 사업 등
5. 자립지원사업 : 직업기능훈련, 취업알선,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
6.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

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위탁기간)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,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기준) ①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사회복지관 종사자수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시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은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비의 보조)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

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,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회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·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-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증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지도·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,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.
- ③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,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.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
3.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
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1조(위탁·수탁 협약의 체결)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 또는 재위탁 계약을

하는 사회복지관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위탁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·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
	부서명	주민생활지원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지 근
	팀 장 직위·성명	복지자원관리팀장 서 원 숙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서 원 숙 (790-6101)

[별표 1]

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2조 관련)

명 칭	소 재 지	비 고
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	하남시 덕풍천서로 9(신장동)	
하남미사강변사회복지관	하남시 아리수로 565(망월동, 미사강변도시13단지아파트)	1층

[별표 2]

사회복지관 인력기준(제6조 관련)

명 칭	인력기준	비 고
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	22명	
하남미사강변사회복지관	11명	

(제1면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사회복지관 추가 설치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매년 지원하며, 첫해에는 기능보강비를 세워 시설 운영 상황에 따른 집기 및 차량 구입비로 지원(기존 복지관 지원 규모와 비례하여 지원)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
총 소요액	450	270	300	330	360	
사회복지관	운영비	250	270	300	330	360
운영지원사업	기능보강비	200	-	-	-	-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1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: 주민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장(안지근)

(제2면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해	당	없	음	
세 출							
사회복지관 운영 지원		450,000	270,000	300,000	330,000	360,000	1,71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450,000	270,000	300,000	330,000	360,000	1,710,000
	지방세	450,000	270,000	300,000	330,000	360,000	1,71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의5(사회복지관의 설치 등)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,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
3.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
4.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·아동 및 청소년
5.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·운영·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.26.]

■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, 2012.8.3.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11.5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>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3.7., 2008.11.5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4.9.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8.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8.3.>]

제23조의2(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)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,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3.>

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, 2012.8.3.>

1. 관장 :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에서 인정한 자
2. 사무분야의 책임자 :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
3.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: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

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3.>

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,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⑤ 삭제 <2012.8.3.>

⑥ 삭제 <2012.8.3.>

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., 2008.11.5., 2010.3.19.>

[본조신설 2004.9.6.]

[제22조에서 이동 <2012.8.3.>]

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

할 수 없다. <개정 2013.6.21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6.21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1.>

[전문개정 2009.4.24.]